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444

발의연월일: 2022. 7. 13.

발 의 자:고용진·윤관석·정일영

김경협 • 안규백 • 백혜련

기동민 · 김주영 · 신영대

맹성규·김민철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소득 신고인원의 대부분이 속해 있는 8,8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은 2008년 이래 거의 변동이 없었음. 누진세하에서 과세표준 구간이 명목소득을 기준으로 고정되어 있음으로 인해 명목소득이 증가하여 구간을 상향 이동하는 경우 실질소득의 증대와 상관없이 세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실제 2008년 이후 소비자물가는 32% 오르고,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는 184만7천원에서 273만 4천원으로 28% 상승함. 하지만 서민과 중산층 대부분이 속해 있는 8,800만원 이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은 15년째 고정되어 있음.급여와 물가는 상승했지만 소득세 과표 구간과 세율이 장기간 고정되어 '소리없는 증세'가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 상황임. 더욱이 올해 물가 오름세가 가파른 터라 일반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세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임.

지난해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는 47조2천억원으로 2009년 13조4천억원에 비해 2.5배 이상 증가함. 특히 올해는 근로소득세가 58조원으로급증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음. 지난 15년 사이 근로소득세가비 배 이상 불어난 것임. 같은 기간 국세는 164조5천억원에서 올해는 396조6천억원으로 2.4배들어난 것과 크게 차이남. 이에 전체 국세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8.1%에서 올해는 14.6%로증가할 것으로 보임. 다른 조세 부담 상승률보다 근로소득세 부담 상승률이 큰 것을 의미함.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 등으로 가계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속에서 근로소득세 부과의 합리성을 제고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과세표준 구간을 일부 상향함과 동시에 세율을 낮추고자 함(안 제55조).

법률 제 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5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5퍼센트
1,5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75만원+(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3퍼센트)
5천만원 초과 9,500만원 이하	530만원+(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3퍼센트)
9,5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65만원+(9,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490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19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억7,190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
10억원 초과	3억8,190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득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7]	거 정 안
제55조(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 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		제55조(세율) ①	
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합소두과세표준	л] ¢
<u>종합소두과세표준</u> 1,200만원 이하	<u>세율</u> 과세표준의 6퍼센트	<u>1,500만원</u> 이하	<u>세율</u> 과세표준의 5퍼센트
1,200만원 <u>초과</u> 4,600만원 이하	72만원+(1,200만원을 <u>초과하는 금액의</u> <u>15퍼센트)</u>	1,500만원초과5천만원이하	75만원+(1,500만원을 <u>초과하는 금액의</u> 13퍼센트)
<u>4,600만원</u> <u>초과</u> <u>8,800만원</u> <u>이하</u>	582만원+(4,600만원을 <u>초과하는 금액의</u> 24퍼센트)	5천만원 <u>초과</u> 9,500만원 이하	<u>530만원+(5천만원을</u> <u>초과하는 금액의</u> <u>23퍼센트)</u>
8,800만원 <u>초과</u> 1억5천만원 <u>이하</u>	1,590만원+(8,800 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u>35퍼센트)</u>	9,500만원 <u>초과</u> 1억5천만원 이하	1,565만원+(9,500만원을 <u>초과하는 금액의</u> <u>35퍼센트)</u>
<u>1억5천만원</u> <u>초과</u>	3,760만원+(1억5천만원 을 초과하는 금액의	<u>1억5천만원</u> <u>초과</u>	3,490만원+(1억5천만원 을 초과하는 금액의

3억원 이하	<u>38퍼센트)</u>
<u>3억원 초과</u> <u>5억원 이하</u>	9,460만원+(3억원을 <u>초과하는 금액의</u> <u>40퍼센트)</u>
<u>5억원 초과</u> <u>10억원</u> <u>이하</u>	1억7,460만원+(5억원을 <u>초과하는 금액의</u> 42퍼센트)
<u>10억원</u> <u>초과</u>	3억8,460만원+(10억원을 <u>초과하는 금액의</u> <u>45퍼센트)</u>

3억원 이하	<u>38퍼센트)</u>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190만원+(3억원을 <u>초과하는 금액의</u> <u>40퍼센트)</u>
<u>5억원 초과</u> <u>10억원</u> <u>이하</u>	1억7,190만원+(5억원을 <u>초과하는 금액의</u> <u>42퍼센트)</u>
<u>10억원</u> <u>초과</u>	3억8,190만원+(10억원을 <u>초과하는 금액의</u> <u>45퍼센트)</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